

농지임대수탁사업 - (타인관계) 구비서류			
【소유자】		【경작자】	
①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	1부	① 주민등록등본	1부
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필지별 발급)1부		② 신분증 사본	1부
③ 토지대장 (필지별 발급)	1부	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	1부
④ 통장사본 및 도장 지참	1부	④ 도장 지참	
※ 연간 임대료 중 5%를 수수료 부담 ※ 계약기간 : 5년 이상(최대 10년)		<b>【채권확보 선택】</b> ① 임대료 선납담보(1년 임대료) ② 서울보증증권 (거창군청 맞은편) -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34-5 ☎055-943-7895	
※ 직접 방문 못할 경우 추가서류 준비 ① 위임장(인감도장날인-지사양식 구비) 1부 ② 인감증명서 1부			

농지임대수탁사업 - (4촌이내 가족) 구비서류			
【소유자】		【경작자】	
①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	1부	① 주민등록등본	1부
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필지별 발급)1부		② 신분증 사본	1부
③ 토지대장 (필지별 발급)	1부	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	1부
④ 4촌이내 가족 확인가능한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	1부	④ 도장 지참	
⑤ 도장 지참			
※ 소유자별 위탁수수료 10만원 - 고지서 발급 ※ 계약기간 : 5년 이상(최대 10년)			
※ 직접 방문 못할 경우 추가서류(위임장, 인감증명서) 준비			
① 위임장(인감도장날인-지사양식 구비)	1부	www.fbo.or.kr -정보마당-서식찾기	
② 인감증명서	1부		
<b>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지은행관리부</b> 우) 50131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☎ (연락처)055-940-5522,5515 (FAX) 055-945-8894			

### 【 계약 유의 사항 】

- ※ 2022년 7월 1일부터, 임차인(경작자)은 농지임대 공고를 통해 선정  
- 신규신청자는 10일 공고 후 순위에 따라 계약
- ※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대제외자에 해당되어 사업신청 불가
- ※ 임차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거리가 직선 30KM 이상은 임차불가
- ※ 임차료 3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
- ※ 개인간 임대차 계약서 가능한 농지  
- 1996.01.01.이전에 취득(매매, 증여)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
- 상속 농지(10,000㎡이내), 영농조건불리지역 농지등